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6명(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6급 이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4. 8. 6. ~ 8.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을 “14”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5”를 “4”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를 “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를 “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을 “14”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5”를 “4”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82”를 “8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55”를 “5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를 “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를 “2”로 한다.

별표 3 중 공업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시설주사 “2” 삭제하고,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삭제하며, 그 뒤에 공업주사·임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주사·공업주사 또는 임업주사 “3”을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9”를 “8”로 하고, 그 뒤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 또

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며, 그 뒤에 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주사보 “2”를 삭제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를 삭제하고, 그 뒤에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식품위생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서기 또는 조리서기 “4”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6”을 “7”로 하고,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삭제하며, 그 뒤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3”을 신설하고, 그 뒤에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5”를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4”를 “3”으로 하고, 조리서기보 “1”을 삭제하고, 농림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사무관 “2”를 “4로 하고, 행정주사 “19를” “17”로 하며, 공업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삭제하고,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삭제하며, 그 뒤에 공업주사·임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주사·공업주사 또는 임업주사 “3”을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10”을 “9”로 하고, 그 뒤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며, 그 뒤에 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주사

보 “2”를 삭제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를 삭제하고, 그 뒤에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식품위생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서기 또는 조리서기 “4”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5”를 “6”으로 하고,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삭제하며, 그 뒤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를 “3”을 신설하고, 그 뒤에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5”를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4”를 “3”으로 하고, 조리서기보 “1”을 삭제하며, 농림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은 2027년 8월 0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8월 00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 2명은 2027년

8월 0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8월 00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2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u> 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u>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u> ----- ----- ----- -----.

신·구정원대비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3</u>	<u>14</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 전문관	<u>5</u>	<u>4</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u>	<u>4</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2</u>	-2
·	·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3</u>	<u>14</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 전문관	<u>5</u>	<u>4</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전산사무관	<u>82</u>	<u>84</u>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 주사	<u>55</u>	<u>53</u>	-2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u>	<u>4</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2</u>	-2

.	.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시설주사	2	<삭 제>	-2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삭 제>	-1
공업주사·임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신 설>	6	+6
.	.	.	
방송통신주사·공업주사 또는 임업주사	3	<삭 제>	-3
행정주사보	9	8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 설>	1	+1
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 설>	2	+2
.	.	.	
방송통신주사보	2	<삭 제>	-2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u>4</u>	<u><삭 제></u>	-4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			
· 식품위생서기·시설서기·전	<u><신 설></u>	<u>4</u>	+4
산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서			
기 또는 조리서기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6</u>	<u>7</u>	+1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	<u>5</u>	<u><삭 제></u>	-5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			
보·식품위생서기보·시설서기보·전	<u><신 설></u>	<u>3</u>	+3
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			
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식품위생			
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	<u><신 설></u>	<u>5</u>	+5
보·운전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운전서기보	<u>4</u>	<u>3</u>	-1
조리서기보	<u>1</u>	<u><삭 제></u>	-1
·	·	·	

농림운영서기보	<u>1</u>	<u><삭 제></u>	-1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	·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2</u>	<u>4</u>	+2
•	•	•	
•	•	•	
행정주사	<u>19</u>	<u>17</u>	-2
•	•	•	
<u>공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또는 시설주사</u>	<u>2</u>	<u><삭 제></u>	-2
<u>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u>	<u>1</u>	<u><삭 제></u>	-1
<u>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u>	<u><신 설></u>	<u>6</u>	+6
•	•	•	
<u>방송통신주사 · 공업주사 또는 임업주사</u>	<u>3</u>	<u><삭 제></u>	-3
행정주사보	<u>10</u>	<u>9</u>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1</u>	+1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식품 위생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 송통신주사보	<신 설>	2	+2
· 방송통신주사보 · ·	· 2 · ·	· <삭 제> · ·	-2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삭 제>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식품위생서기 · 시설서기 · 전 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운전서 기 또는 조리서기	<신 설>	4	+4
·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 · 5	· · 6	+1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	<삭 제>	-5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 보·식품위생서기보·시설서기보·전 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 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신 설>	3	+3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식품위생 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 보·운전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신 설>	<u>5</u>	+5
운전서기보	<u>4</u>	<u>3</u>	-1
조리서기보	<u>1</u>	<삭 제>	-1
·	·	·	
농림운영서기보	<u>1</u>	<삭 제>	-1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	·	·	
·	·	·	